

제안번호	제 70 호
의결년월일	1996. . . (제 회)

## 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출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6. 4. 4.

# 서산시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의안 번호	17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4. 4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공공하수도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집용료, 하수도 사용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(안 제2조).

나.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,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·관리, 차입금 이자 등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(안 제3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·제정근거
-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하수도법 제21조

## 서산시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서산시 공공하수도(이하 “하수도”라 한다)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서산시 하수도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하수도 접용료·하수도 사용료·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.
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,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·관리,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제4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) ①지방재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징수관 - 건설도시국장
2. 분임징수관 - 수도과장
3. 경리관 - 건설도시국장
4. 분임경리관 - 수도과장
5. 총괄채권관리관 - 건설도시국장
6. 채권관리관 - 수도과장
7. 총괄채무관리관 - 건설도시국장
8. 채무관리관 - 수도과장
9. 물품관리관 - 수도과장
10. 물품출납원 - 업무계장
11. 지출원 - 업무계장
12. 수입금출납원 - 업무계장
13.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- 업무계장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.

제5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)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.

제6조(준용) 이 특별회계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심 사 보 고 서

【서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】

1996. 4. 15

산업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6. 4. 6
- 나. 제출자 : 서 산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1996. 4. 8
- 라. 상정일자 : 1996. 4. 15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수도과장 남대우)

### 가. 제안이유

공공하수도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전용료, 하수도 사용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. (안 제2조)
-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,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설치 및 유지, 관리, 차입금이자 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 (안 제3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조례는 공공하수도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하수도법 제21조를 근거로하여 설치하는 조례로서,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었음

#### 5. 토 론

- 생략

#### 6. 소수의견

- 없었음

#### 7. 심사결과

- 원안대로 가결